

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644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6443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단5084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형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변론 종결 2020. 9. 10.

판결 선고 2020. 10. 1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단5084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2, 6, 9째줄, 제6면 18, 20째줄, 제7면 2, 3, 4, 7째줄의 각 'F' 부분을 각 'T'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6 내지 17째줄 부분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부분을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근

판사김평호

판사김혜진